

문서번호	BSKS-1-1-28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1/9

2012.02.01.제정 2012.05.29.개정 2012.07.20.개정 2014.02.01.개정 2016.11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0.09.25.개정 2021.12.22.개정 2022.04.15.개정 2022.11.24.개정 소판부서 : 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학칙 제28조(휴학)에 의한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휴학의 구분) ① 일반휴학은 가정형편 등 기타(해외유학, 연수 등)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는 자의 휴학을 말한다

- ② 군입대 휴학은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- 1. 재학 중 군입영으로 인하여 휴학원을 제출한 자
 - 2. 일반 휴학 중인 자로서 군복무확인서 및 군입영통지서, 병적증명서를 제출한 자
- ③ 신병휴학은 질병으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병·의원 전문의(한의사 포함)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한 자
- ④ 육아휴학은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
 - 1. 만 8세 이하(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)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자
 - 2.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가족관계증명서,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 <신설 2016.11.01.>
- ⑤ 유급휴학은 졸업요건 중 졸업학점 및 전공학점이 부족하여 졸업하지 못한자 <신설 2019.07.16.>

제3조(휴학자의 신분)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.

제4조(휴학의 제한) ① 신입생은 1학년 1학기에는 가사사유로 인한 휴학을 할 수 없다.

- ② 일반휴학은 당해학기 수업일수 3분의 1까지 지도교수 혹은 학과장을 경유하여 휴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05.29., 2020.09.25.>
- ③ 1항 및 2항 이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, 교무처에 신청하되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신설 2012.05.29.> <개정 2020.09.25.>
- ④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한 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 [별지 서식]에 의거 산업체의 장에



문서번호	BSKS-1-1-28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2/9

게 승인을 받아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07.16.>

- ⑤ 휴학을 신청한 재학생에 대해 수업일수 3분의 1선 또는 30일이내의 휴학 숙려기간을 두어 별도의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12.22.>
- 제5조(출원 횟수) 휴학기간은 1년을 단위(유급휴학은 제외)로 허가하며 재학중 2회까지 허가하되, 부득이한 경우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1회 휴학기간을 6개월 단위로 허가하거나 휴학 회수를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군입대휴학, 신병휴학, 육아휴학은 예외로 한다.<개정 2016.11.01.. 2019.07.16.. 2022.11.24.>
- 제6조(휴학기간) ① 일반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군입대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복학예정학기를 고려한 복무기간으로 한다.
 - ③ 신병휴학, 일반휴학 중 군입대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입대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 군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는 귀향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대학 교무처에 귀향조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09.25., 2022.11.24.>
 - ④ 유급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19.07.16.>
- 제7조(휴학절차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학을 원하는 자는 각 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 - 1. 일반 휴학
 - 가. 휴학원 작성(보호자 도장 날인)
 - 나. 사무처 등록확인
 - 다. 지도교수에게 휴학원 제출
 - 라. 지도교수 승인 및 보호자 의사 확인
 - 마. 교무처 제출 <개정 2020.09.25.>
 - 사. 교무처장 승인<개정 2019.07.16., 2020.09.25>
 - 2. 군입대 휴학
 - 가. 휴학원 작성(보호자 도장 날인, 군입영통지서 첨부)
 - 나. 사무처 등록확인
 - 다. 지도교수에게 휴학원 제출
 - 라. 지도교수 승인 및 보호자 의사 확인
 - 마. 교무처 제출<개정 2020.09.25.>
 - 사. 교무처장 승인<개정 2019.07.16., 2020.09.25>
 - 3. 신병 휴학
 - 가. 휴학원 작성(보호자 도장 날인, 4주이상 진단서 첨부-전문의 발행)
 - 나. 사무처 등록확인
 - 다. 지도교수에게 휴학원 제출
 - 라. 지도교수 승인 및 보호자 의사 확인
 - 마. 교무처 제출<개정 2020.09.25.>
 - 사. 교무처장 승인<개정 2019.07.16., 2020.09.25>
 - 4. 육아 휴학
 - 가. 휴학원 작성(보호자 도장 날인, 전문의 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


문서번호	BSKS-1-1-28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3/9

- 나. 사무처 등록확인
- 다. 지도교수에게 휴학원 제출
- 라. 지도교수 승인 및 보호자 의사 확인
- 마. 교무처 제출 <개정 2020.09.25.>
- 사. 교무처장 승인<신설 2016.10.13., 개정 2019.07.16., 2020.09.25>
- 제8조(휴학서류 제출시기) ① 일반휴학자의 휴학은 당해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까지만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다. 단, 신병휴학, 군입대휴학, 육아휴학은 예외로 한다.<개정 2016.11.01.>
 - ② 군입대휴학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영일 15일전부터 휴학원을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2.07.17.>
 - ③ 일반 휴학자가 군입영으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 무확인서, 병적증명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09.25.>
 - ④ 휴학 숙려기간동안 재학생과의 상담이 완료된 후 휴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<신설 2021.12.22.>
- 제9조(휴학자의 성적인정) ① 휴학자가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교수가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한다.
 - ②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휴학자의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만으로 평가하며, 휴학 후의 수업일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제10조(휴학자의 납입금) ① 등록을 필한 자가 수업일수 3/4선 이전에 휴학을 하는 경우에 기 납입한 등록금을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한다.
 - ② 휴학자의 기 납부 등록금은 복학시 전액 대체 인정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28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4/9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 로 『산학처』를 『산학·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5.12.24.)에 의하여 『산학·취업처』를 『산학 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2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28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5/9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28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6/9

[별지 제 1호 서식] 휴학원 <개정 2020.09.25.>

결재일	담당	팀원	과장	처장

		• •		•				
학 번		성 명				학년, 반	()학년	! ()반
학 과		(과/계열))	생년월일		년	월	일
휴학구분	1. 군 입대(), 2 일	l반(), 3.신병	(), 4. 유급	() 4. 휴학	연장() 7	대학상태	(재 학,	휴학)
<u>휴학</u> 사유		대 준비), 10 05 개인 사정 07 병가 휴학	(가사 사정,	비(연수,유 진로 변경)	-학), 10 3 명, 자기별			업 관련), 숙,기타),
휴학기간	년 월 일	- 년	월 일(년) 5	부학예정	년	()학년()학기
흐	!생상담센터 상담	필요 여부() / 학	·생상담센	터 상담	자 :		(1)
전산 입력 일자		사 무 처 등록확인 @		학기 등	등록필	도서대 확인	출	(1)

위의 본인은 보호자 연명으로 휴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지도교수 상담내용]	[보호자 확인내용]
	● 통화자 : ● 통화내용:

확인자 지도교수: **(1)** 학과/계열장: **(1)**

본 인 :

(인) / [연락처:

]

보호자:

(인) / [연락처:

]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

핰 확 인 휴 서

학	번					성	명				학니	크, 반	()학년	()반
학	과	(과/계열)						생민	년월일				년	월		일
호하	·구분	군입대,	일반,	신병,	휴학업	거자	휴학기	기간	년	월	일	~	년	월	일(년)
T =	1 &	그 급네,	글 단,	건경,	π = 1	7 6	복학(예정		년	() 🖻	학년 ()학기	
※ 본	휴학확	인서는 접	선수 확인	인용이며	, 최종	· 휴	학처리	확인	<u>l</u> 은 접수	: 1일	이후	학적:	조회를	통해	하기 ㅂ	바람.

위의 사실을 확인함.

- 교 무 저 장

 1. 복학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에 의거 제적처리 됨.

 2. 휴학기간은 1년(2학기)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개강 후 수업일수 ⅓ 선까지만 휴학을 허가함.

 다만, 군입대 · 신병휴학은 예외로 하며, 휴학 중 군입대를 하였을 경우에는 입대일자가 기재된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군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. 또한 군입대휴학한 자가 군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귀향으로부터 5일 이내 복교 신청하여야 함.

 <*참고사항>
 1. 군입대휴학자의 경우 군복무 중 원격강좌를 통해 학점취득 가능함.
 2. 학점취득방법 (군부대 내의 컴퓨터방의 설치 등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지 사전 확인 후 수강 신청바람.) 가. 국방부 및 군인공제회 학점취득(나라사랑포털사이트 https://www.narasarang.or.kr)

 나. 본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

 3. 학점인정 및 시기 : 복학 후 학기별 최대 24학점 이내 수강신청 하여야 학점인정 가능함.

 4. 병무청 공지사항 :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연기자로 관리됩니다. 군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,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28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7/9

<u>휴</u> 학/	생 지도	<u>내용</u>		
학 과 : 학 번 : 이 름 : <u>학생상담센터 상담내용</u>				
학과 교수 상담내용	학생	상담센터 상담	자 :	<u> </u>
위 학생에 대하여 지도 내용을 제출학	합니다.			
20 년	월	일		
학과	/ 계열장		•	
	교 수		(1)	
	교 수		1	



문서번호	BSKS-1-1-28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8/9

[별지 제1호 서식]<개정 2020.09.25.>

휴 학 확 인 서

학	번		성	명				ਰੁੱ	†년,	반	()학년	()반
학	과	(과/계열)	l)	주 만	민 등	록	번 호	5				_		
중 최	휴학구분 군입대, 일반, 신병, 휴학연장	휴학	기간	-	년	월	일	. ~		년	월	일(년)	
市当		복학	예정			년	()	학님	년 ()학기		

※ 본 휴학확인서는 접수 확인용이며, 최종 휴학처리 확인은 접수 1일 이후 학적조회를 통해 하기바람.

위의 사실을 확인함

20 년 월 일

교 무 처 장

<유의사항>

- 1. 복학학기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에 의거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.
- 2. 휴학기간은 1년(2학기)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개강 후 수업일수 $\frac{1}{3}$ 선까지만 휴학을 허가합니다. 단, 군입대, 신병휴학은 예외로 합니다.
- 3. 휴학 중 군입대를 하였을 경우에는 입대 일자가 기재된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군입대 휴학한 자가 군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귀향일로부터 5일 이내 복교 신청하여야 합니다.

<참고사항>

- 1. 군입대휴학자의 경우 군복무 중 원격강좌를 통해 학점취득이 가능합니다.
- 2. 학점취득방법 (군부대 내의 컴퓨터방의 설치 등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지 사전 확인 후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- 가. 국방부 및 군인공제회 학점취득(나라사랑포털사이트 https://www.narasarang.or.kr) 나. 본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
- 3. 학점인정 및 시기 : 군복무중 취득한 학점은 복학 후 학기별 최대 24학점이내 수강신청 하여야 학점인정 가능합니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28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9/9

[별지 제 2호 서식] 휴학동의서<표 신설 2019.07.16.>

《산업체위탁생만 작성》

휴 학 동 의 서

학 번:

이 름:

사 유:

상기 자는 당사의 재직자로 귀 대학의 위탁생으로 추천·입학하여 과정이수 중 위와 같은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오니,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

신 청 자: (인)

산업체 대표:

직인